

#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82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9월 3일  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일부 조항을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3조제3항).
- 의무부과규정을 삭제함(안 제6조5호)

#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” 를 “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”로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.

#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· ②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의무)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4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의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<u>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u></p>